



연구논문

인조 대 추국 사건과 추국청의 운영

권은나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조선후기사 전공

eus2eu@naver.com

I. 머리말

II. 인조 대 추국 사건의 양상

III. 위관 중심의 추국 운영

IV. 맷음말

I. 머리말

조선은 유교 윤리를 위반하는 범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특별 재판 기구인 추국청(推鞫廳)을 설치하여 운영했다. 추국청에서 담당하는 사건은 『당률소의』에서 규정되어 『대명률』로 전승된 십악(十惡)을 근거로 했다. 십악은 충효를 위반한 범죄 행위를 규정한 것이다.¹ 조선은 유교 이념을 기반으로 설계된 국가였기 때문에 유교 윤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가장 엄격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했다.

십악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² 하나는 국왕에 대한 범죄인 반역(叛逆)이며,³ 다른 하나는 강상(綱常)의 윤리를 범한 강상범죄로 구분된다. 두 유형의 범죄는 조선의 통치체제를 훼손하는 범죄였기 때문에 국왕이 직접 처결했다. 이를 국왕의 특명 기관인 의금부가 담당했다. 고려 말부터 십악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 전문화되면서, 태종 대에는 기관의 명칭이 의금부로 정

1 『唐律疏議』; 김태민·임대희(편), 『역주 당률소의: 명례편』(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4).

2 십악의 謀反, 謀大逆, 謀叛, 大不敬은 반역의 범주이며, 惡逆, 不道, 不孝, 不睦, 不義, 內亂은 강상범죄의 범주로 구분된다.

3 조선시대 국가 범죄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반역과 강상범죄이다. 강상범죄는 연구자 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공통된 역사 용어로 사용된다. 사료상에서도 강상이라는 용어가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반역은 강상범죄와 경우가 다르다. 반역의 개념이 『당률소의』에서 규정되어 『대명률』로 전승된 十惡에 근거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다만, 십악으로 규정된 그 행위를 어떤 단어로 지칭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한다. 같은 시대, 같은 사건을 연구함에도 연구자별로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연구의 전진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역사상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인 동시에 현대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반역'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反逆/叛逆은 통치자와 통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계획하거나 시도하는 범죄로 정의된다. 통치자가 자신이나 자신이 구축·유지하는 통치 질서에 위협되는 행위로 판단하면 이를 범죄로 처벌했기 때문에, 반역이라는 용어는 통치자의 가치 판단이 부여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역이라는 용어는 통치자의 시각으로 논지가 전개된다는 전제를 가진다.

해졌다.⁴ 이와 함께 추국(推鞫)이라는 기능이 결합되면서 의금부는 추국이라는 특수 재판을 담당했다.⁵

의금부는 국왕의 명에 따라 추국을 수행하는 관청으로,⁶ 의금부의 일반 사법 기능은 관료의 범죄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십악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도 의금부는 추국 주관기관으로 추국청을 구성했다. 추국청은 의금부 관원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추국의 방법과 형식, 장소에 따라 참여 관원이 상이했다.⁷

의금부가 주관하는 추국청이 언제부터 십악사건을 처벌하기 위해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의금부가 주관했고, 위관(委官)을 삼아서 추국을 진행한 사례를 통해 대략을 가늠해 볼 수 있다.⁸ 태종 대 의금부로 개칭되기 전에 충효범죄에 대한 추국은 삼성(三省)에서 담당하고,⁹ 사건에 따라 의금부의 전신 기관이 참여했다. 의금부로 개칭된 이후에는 의금부와 삼성이 함께 충효범죄에 대한 추국을 주관했다. 세종 대 이후 십악사건은 의금부가 전담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삼성과 함께 추국하는 경우는 현저히 줄어든

4 『太宗實錄』 14년(1414) 8월 21일.

5 정진혁, 「조선후기 형정 개혁과 추국 운영의 변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4a), 13~16쪽.

6 『經國大典』 「吏典」 義禁府 '掌奉敎推鞫之事'.

7 김영석은 추국의 종류를 금부단독추국·국왕주재추국·삼성교좌추국으로 분류했다. 김영석의 기준에 따르면, 의금부 구성원으로만 진행하는 추국을 금부단독추국, 임금이 직접 국문하거나 전현직 정승, 승지, 대간 및 의금부 당상관이 합동으로 국문하는 추국을 국왕주재추국, 삼성이 의금부에서 의금부 당상들과 함께 자리한 삼성추국을 삼성교좌추국으로 구분한다. 국왕주재추국은 하위 분류로 친국·친립추국·정국·궐정추국·추국·금부추국이라 규정했다. 김영석, 「의금부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3).

8 三省이 주관하고, 위관을 삼는 추국의 형태는 태조 대부터 나타난다. 『太祖實錄』 6년(1397) 5월 27일.

9 김영석은 조선 초기의 삼성은 형조와 양사를 의미했다가, 성종 대 이후 바뀐 것으로 보았다. 김영석, 앞의 글(2013), 306~307쪽.

다.¹⁰ 추국청이라는 명칭은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태종 대부분의 의금부가 주관하는 임시 재판기구의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담당하는 사건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추국청은 연구자들에게도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관련 연구로는 추국청을 주관했던 의금부에 대한 연구,¹¹ 추국 절차에 대한 제도사적인 연구,¹² 추국청에서 재판한 사건에 대한 연구,¹³ 추국 과정을 기록한 『추안급국안』에 대한 연구¹⁴로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0 이하경, 「강상범죄 재판절차, 삼성추국」, 『법사학연구』 71, 2025, 57~58쪽.

11 김영석, 앞의 글(2013).

12 김우철, 「조선후기 추국 운영 및 결안의 변화」, 『민족문화』 35(2010); 이하경, 「강상범죄 재판 절차, 삼성추국」, 『법사학연구』 71(2025); 전경목, 「조선시대 역모사건의 조사와 재판」, 『조선후기 법률문화 연구』(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정진혁, 「조선후기 형정 개혁과 추국 운영의 변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4a); 정진혁, 「18세기 무신란 진압과 비상 형정의 형성」, 『동방학지』 209(2024b); 정진혁, 「조선후기 결안의 운영 체계와 개편 양상」, 『한국문화』 110(2025a); 정진혁, 「18세기 친국 확대와 추국 운영의 개편」, 『학림』 55(2025b).

13 김정자, 「1801년(순조 1) '신유옥사'의 시작과 변화 양상: 이가환·이기양 추국 사건과 주문모 신부 추국 관련 『추안급국안』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67(2023); 김정자, 「1862년(칠종 13) '이하전 옥사'의 전말과 그 의미: 『좌포청등록』·『추안급국안』을 중심으로」, 『한국 학논총』 63(2025); 김정자, 「1866년(고종 3) '병인사옥'과 1868년(고종 5) '덕산사건'·'무진 옥사'의 차분과 그 의미: 『추안급국안』을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86(2025); 오항녕, 「기축옥사의 비극적 사건과 기억들」, 『한국인물사연구』 23(2015); 이하경, 「조선후기 추국장의 정치적 의미: 영조 13년(1737) 김성탁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0(2018b); 조윤선, 「영조 9년 남원 만복사 폐사 사건의 정치적·법제적 고찰」, 『전북사학』 33(2008); 정진혁, 「조선후기 말세론 사건에 대한 추국청의 형사 대응」, 『한국사연구』 196(2022); 차인배, 「1853년(칠종 4) 김수정 역모사건에 관한 사법적 재고: 『포청등록』과 『추안급국안』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66(2025).

14 문경득, 「조선후기 신문 진술 기록의 사료 비판 방법론 연구: 무신역옥추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3(2017); 오항녕, 「조선시대 추안에서 만난 주체의 문제」, 『중국어문논 역총간』 34(2014); 이하경, 「조선후기 추국의 문사낭청 역할에 관한 일고찰」, 『사학연구』 117(2022); 조윤선, 「영조 6년(경술년) 모반 사건의 내용과 그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42(2007); 정광호, 「(해제) 추안급국안」, 『민족문화』 1(1975); 정석종, 「추안급국안의 민중 사적 가치」, 『한국학문현연구의 현황과 전망』(성남: 아세아문화사, 1983); 정석종, 『조선후기 사회변동연구』(서울: 일조각, 1993); 한상권, 「『추안급국안』 자료의 신빙성: 1689년(숙

추국청 연구는 추국에 회부된 사건(이하 추국 사건)을 통해 추국의 시행 양상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추국의 종류가 장소, 참여 관원 및 좌차에 따라 구분되었다는 연구를 바탕으로,¹⁵ 왕대별 형정 운영의 특징을 밝히는 연구로 확장되었다.¹⁶ 추국청은 국왕의 명에 따라 개시되고, 추국의 종류가 결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국 사건의 중요성이 나 난이도, 혹은 정치적인 맥락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기준의 연구는 특히 친국(親鞠)에 보다 주목한 측면이 있다. 친국은 위관을 임명하는 추국 방식이 아닌, 국왕이 직접 추국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가 잘 드러난다. 시기적으로는 숙종 대 4건의 친국을 통해 국왕 독단으로 친국을 결정할 수 있으며, 관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반발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논의했다.¹⁷ 영·정조 시기에 친국이 확대되는 양상을 통해 친국이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연구도 있다. 친국의 시행 방식이 시기별로 변동하는 점을 통해, 17세기 위관 위임 추국에서 영조 대 국왕 친국으로, 정조 대 국왕·위관 종합 추국 방식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밝혔다.¹⁸

추국청의 운영 양상은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형정 운영의 특징을 밝혀 주는 중요한 매개이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가 18세기에 집중된 경향이 나타난다. 법전의 편찬과 탕평정치기와 맞물린 정국의 변동이 추국 운영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앞 시기인 17세기의 추국청 운영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측면이 있다.

종 14) 박태보 친국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02(2023).

15) 오갑균, 『조선시대 사법제도 연구』(부산: 삼영사, 1995); 김영석, 앞의 글(2013).

16) 이하경, 「추국장에서 만난 조선후기 국가: 영조와 정조시대 『추안급국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8a); 정진혁, 앞의 글(2024a); 정진혁, 앞의 글(2025b); 한상권, 앞의 글(2023).

17) 한상권, 위의 글(2023).

18) 정진혁, 앞의 글(2025b).

17세기는 많은 변화가 야기된 시기이다. 정치·사회적인 여파는 추국청의 운영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인조 대가 주목된다. 선조 대까지 조선 전기적 질서의 흐름인 위관 위임 추국 방식으로 추국청을 운영했다. 그러나 광해군 대 친국의 확대와 비상한 형정의 시행으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¹⁹ 반정을 통해 국왕이 된 인조는 복고(復古)를 선택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형정 운영에서도 변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인조 대는 조선 전기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조선 후기 변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인조 대에 발생한 추국이 개시된 사건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추국 운영 양상을 살펴보자 한다. 인조 대 추국 운영에 대한 기존 연구는 개별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²⁰ 기존 연구에서는 일부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인조 대 전반의 추국청 운영 양상을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조 대 전체 추국 사건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다.

주요 자료는 연대기 사료와 『추안급국안』이다. 『추안급국안』은 추국청에서 중죄인을 심문한 기록인 추안(推案)과 판결문인 국안(鞫案)을 모은 책이다.²¹ 인조 대의 『추안급국안』 기록이 앞선 시기보다 풍부하지만, 연대기 사료와 『추안급국안』에 동일한 사건이 모두 기록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비교·검토

19 권은나, 「광해군대 반역 사건을 통해 본 정국운영」, 『대구사학』 148(2022).

20 권내현, 「강상과 역모, 노비 첨의 남편 고발」, 『조선시대사학보』 113(2025); 김건우, 「1629년 말치 고변사건의 전개와 그 의미」, 『역사와 실학』 44(2011); 김인숙, 「인조대의 궁 중저주사건과 그 정치적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31(2004); 이가희, 「인조 6년(1628) 송 광유 고변사건 처리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 『전북사학』 63(2021); 장희홍, 「조선후기 역모사건과 환관의 내옹」, 『실학사상연구』 29(2006).

21 『추안급국안』은 선조 34년(1601)~고종 29년(1892)까지의 기록 총 331책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후, 1983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총 30책의 영인본으로 간행했으며, 2014년에는 90권으로 완역되었다. 인조 대의 『추안급국안』에는 1623년(인조 1)부터 1647년(인조 25)까지의 기록이 전한다.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연대기 사료와 『추안급국안』을 비롯한 추국 자료를 함께 비교·검토할 것이다.²²

이 글에서는 인조 대 추국청의 운영 양상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인조 대 추국으로 조사되고 처벌된 사건을 유형화하여 파악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인조 대 추국 운영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 추국청의 개시 과정과 설치 장소, 참여 관원을 확인하고, 사건에 따른 심문 양상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II. 인조 대 추국 사건의 양상

인조 대 의금부가 주관하여 추국청에서 수사하고 재판한 사건의 유형은 세 범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반역 사건, 두 번째는 강상범죄, 세 번째는 관료의 범죄 조사 및 처결에 관한 사건이다. 의금부의 일반 기능은 관료의 범죄를 조사하고 처결하는 것이다. 반역과 강상과 같은 충효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금부가 주관하여, 추국 종류에 따라 대신, 대간, 승지 등 여러 관료의 협동하여 조사하는 추국청이 설치되어 사건을 조사하고 처결했다.

인조 대 추국 사건의 양상을 충효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인조 대 반역 사건은 총 31건으로 확인된다.²³ 반역 사건으로 선별한 기준

22 별도의 추국 자료로 『국청일기』를 활용할 것이다. 『국청일기』는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鞠廳日記』, 청구기호 K2-3426). 이는 1646년(인조 26)부터 1804년(순조 4)까지의 추국 기록이며, 총 19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김갑천은 인조 대 발생한 전체 역모 사건을 총 17건으로 집계했다[김갑천, 「인조조의 정치적 '適實' 지향성에 관한 연구: 和斥論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8)]. 김용희은 인조 대 정국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건을 14건으로 선별했다. 1623년 유전 사건, 1623년 이유림 사건, 1624년 문희 무고사건, 1624년 박홍구 사건, 1625년 박응

은 당대에 ‘반역’으로 처벌한 것으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① 결안 작성 후 조율에서 『대명률』 「모반대역」을 인용하여 처벌한 경우, ② 결안 작성 후 조율 문서가 없으나, 신체형과 부가형이 실시된 경우, ③ 결안·조율 문서가 없으나, 신체형과 부가형으로 처벌한 경우이다.²⁴ 〈표1〉은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인조 대에 발생한 반역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²⁵

인조 대에 다양한 유형의 반역 사건이 발생했다. 관군과 군사적 충돌을 일으킨 사건부터 반역 계획 단계에서 검거된 사건, 국왕을 향한 부도(不道)한 말과 글 등 여러 유형이 나타난다. 특히 인조 즉위 과정,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 장성한 왕세자의 죽음 등 다양한 정치적인 변수가 반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변동과 혼란으로 인한 반역 유형도 확인된다.

시기별로 보면, 재위 초기에는 광해군·종친을 국왕으로 추대하려는 사건이 주로 발생했다. 반역 주체별로 유형화하면, 종친을 비롯한 왕족, 관료, 비(非)관료 등 다양한 주체가 등장한다. 광해군을 비롯한 종친이 언급되는 반

성 사건, 1627년 이인거 사건, 1628년 유효립 사건, 1628년 임석후 사건, 1629년 임경사 사건, 1629년 양경홍 사건, 1631년 정한 사건, 1635년 이기안 사건, 1644년 심기원 사건, 1646년 안의신 사건이다. 이씨 왕족이 추대되거나 관련된 사건은 14건 중 10회이다. 광해군 7회, 인성군 5회, 흥안군 2회, 인홍군과 회은군이 각 1회씩 연루되었다[김용희, 「인조반정의 명분과 정권의 정통성 논쟁」, 『역사학연구』 27(2006), 171~172쪽]. 기준 연구에서는 『인조실록』에 기반하여 사건을 선별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연대기 사료인 『인조실록』, 『승정원일기』 및 『추안급국안』을 함께 검토하여 반역으로 처벌받은 사건을 기준으로 선별했다.

- 24 모든 사건 관련자의 추국 문서가 온전한 것은 아니며, 결안, 조율, 처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추국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역으로 처벌받은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 반역 사건으로 분류한 것이다.
- 25 『인조실록』, 『승정원일기』, 『추안급국안』을 비교·검토하여 사건을 추국이 시행되었던 사건을 정리했다. 사건명은 사건의 주모자[逆魁]로 처벌받은 인물의 이름을 붙여 표기했다. 반역 사건의 가담자가 추후에 체포되어 추국되어 처벌받는 경우도 같은 사건으로 표기했다. 날짜는 추국에 관련된 처음의 논의가 발견되는 시점으로 설정했다. 내용은 반역 행위와 반역자의 목적을 간략하게 요약했으며, 처벌 양상은 수괴의 처벌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표1-인조 대 반역 사건

순번	사건명	고변 날짜	사건 내용	추국 종류
1·2	저주사건 재수사 및 이이첨 세력 제거	1623년 3월 19일	1. 광해군 대 인목대비에 대한 무고 2. 不忠을 명분으로 이이첨 세력 제거	월정추국 [정국]·삼성추국
3	유전 반역 사건	1623년 7월 27일	광해군 복위 계획	정국
4	이유림 반역 사건	1623년 10월 1일	거병하여 사대장과 도장대감을 제거하 고 흥안군을 추대	정국
5	이괄 반역 사건	1624년 1월 17일	거병하여 흥안군을 추대	정국 삼성추국 금부추국
6	박구 반역 사건	1624년 9월 11일	인조의 徽를 부르며, 부도한 말을 하고, 통제사와 병사를 살해할 것을 계획	금부추국 정국
7	박홍구 반역 사건	1624년 11월 8일	거병하여 광해군을 태상왕으로 받들고 인성군에게 전위하게 할 것을 계획	정국
8	박응성 반역 사건	1625년 9월 5일	광해군을 상왕으로 받들고 인성군을 추 대할 것을 계획	정국 금부추국
9	이인거 반역 사건	1627년 10월 1일	군사를 일으켜 후금 토벌	
10	유효립 반역 사건	1628년 1월 3일	광해군을 상왕으로 인성군에게 전위	정국
11	임석후 반역 사건	1628년 3월 4일	공신들을 모두 죽이고 광해군을 복위시 킨 후, 인성군에게 전위	정국
12	이총경 반역 사건	1629년 2월 28일	군사를 모아 서울을 공격	금부추국
13	임경사 반역 사건	1629년 윤4월 19일	광해군을 옹립하고, 수도를 옮길 것을 계 획	
14	양홍경 반역 사건	1629년 11월 20일	후금과 내통하여 요동 지역 침략 계획	
15	한선내 반역 사건	1630년 8월 19일	형문을 받던 중 스스로 역적이라고 고변	금부추국
16	정한 반역 사건	1631년 2월 3일	정한을 국왕으로 추대할 것을 계획	정국 금부추국
17	유응형 반역 사건	1632년 1월 24일	사대장과 자신의 운명을 점치면서 거사 를 계획	정국 금부추국
18	귀희 반역 사건	1632년 10월 23일	궁중에서 인조를 저주	금부추국
19	이탁 반역 사건	1633년 12월 19일	인조에 대한 부도한 언행	금부추국
20	이기안 빙역 사건	1635년 2월 24일	인조를 능양군으로 지칭	금부추국
21	김고 반역 사건	1638년 12월 18일	인조를 향한 부도한 언행	

순번	사건명	고변 날짜	사건 내용	추국 종류
22	저주 반역 사건	1639년 8월 29일	궁중에서 인조를 저주	금부추국
	저주 반역 사건	1639년 10월 13일		
23	이계 반역 사건	1642년 10월 20일	조선의 사정을 용골대에게 밀고	추국 없이 종결
24	애향 반역 사건	1642년 2월 23일	궁중에서 인조를 저주	추국 없이 종결
25	이정해 반역 사건	1643년 4월 7일	청의 사신에게 조선의 사정을 밀고	금부추국 삼성교좌
26	권이평 반역 사건	1643년 4월 13일	청나라 칙사에게 망명 시도	삼성추국
27	심기원 반역 사건	1644년 4월 10일	회은군 이덕인 추대 시도	금부추국
28	폐세자빈 강씨 반역 사건	1646년 2월 3일	인조 독살 시도	금부추국
29	안익신 반역 사건	1646년 3월 27일	거병하여 왕위교체	정국
30	의정 반역 사건	1646년 4월 16일	궁중에서 인조를 저주	
31	예옥 반역 사건	1647년 4월 17일	인조를 저주하여, 폐세자빈 강씨의 복수	정국

역 사건과 인조반정의 공신(功臣)이 반역의 주체가 되는 사건이 인조 재위 초기에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인조반정이라는 정치적 파동이 불러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광해군 대 권력을 잡았던 부류이다. 광해군 대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이들은 광해군을 다시 앞세워 권력을 얻고자 했다. 1624년 박홍구 반역 사건, 1628년 유효립 반역 사건이 이러한 욕망이 표출된 사례이다. 또한 선조에게 영창대군이라는 적자 외에도, 14명의 많은 서자(庶子)가 있었다. 인조에게는 삼촌에 해당하는 여러 군이(君) 반역 사건에 수차례 연루되었다. 1623년 이 유림 반역 사건과 1624년 이괄 반역 사건에 흥안군, 1624년 박홍구 반역 사건, 1628년 유효립 반역 사건, 1628년 임석후 반역 사건에 인성군이 연루되어 모두 반역죄로 처벌되었다. 특히, 인성군은 광해군이 연루된 반역 사건에 함께 연루된 것이 특징이다. 1644년 심기원 반역 사건에는 선조의 가계는 아

니지만 항렬 상 인조의 숙부인 회은군이 반역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인조반정에 참여했으나 만족할 권력을 얻지 못한 경우에, 반역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 1624년 이괄 반역 사건은 인조반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공신으로 책봉되었으나, 공신 농훈 관련한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으킨 사례이다.

재위 중후반에는 명청교체기의 영향으로 후금·청이 연루되는 반역 사건과 인조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말과 글에 기인한 반역 사건이 발생했다. 병자호란 이전부터 청의 위세를 기반으로 입신한 부원배의 활동이 활발했다. 특히, 평안도 은산의 노비였던 정명수는 사르후 전투의 포로에서 역관으로 입신하여 1643년 이후로는 황제의 칙사로 조선에 파견되어 정1품 영중추부사에 올랐다. 정명수의 등장으로 일부 조선인들이 청으로 망명하여 개인의 성취를 도모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²⁶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로 투항하거나 청나라 군대를 활용하여 조선의 조정을 공격하려는 사건도 발생했다. 1629년 양경홍 반역 사건, 1643년 이정해 반역 사건과 퀸이평 반역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인조에 대한 부도한 언행으로 처벌받은 사건도 있었다. 1633년 이탁 반역 사건에서는 인조의 즉위를 부정하는 발언을, 1635년 이기안 반역 사건에서는 인조를 '능양군'이라고 지칭하여 처벌된 사례가 있었다.

재위 말년에는 장성한 세자의 죽음의 여파로 궁궐 세력이 개입한 저주 사건이 발생했다. 1646년 폐세자빈 강씨 반역 사건은 유례없는 사건이다.²⁷ 1645년 6월 소현세자가 병사(病死)한 후, 그의 아내인 강씨가 인조를 저주하

26 우경섭, 「인조대 친청파의 존재에 대한 재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1(2017), 126~127쪽.

27 반역 사건은 당대에도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현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폐세자빈 강씨와 관련된 반역 사건은 연구자에 따라 조작사건으로 파악하거나, 강빈의 저주를 인정하는 측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반역 사건을 분석할 때, 당대의 처벌로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독살을 시도했다. 강씨는 폐세자빈이 되어 사사되었고, 소현세자와 강씨의 세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1646년 폐세자빈 강씨 반역 사건의 연장선으로 1646년 의정 반역 사건, 1647년 애순 반역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왕위 교체나 정권 찬탈보다는 인조를 저주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릉(陵)이나 능의 부속물을 훼손하는 범죄도 반역의 범주에 포함된다. 1626년 선릉의 화재,²⁸ 1639년 영릉 정자각의 화재,²⁹ 1648년 순릉의 혼유석(魂遊石)·문무석(文武石)과 장군석(將軍石) 훼손 및 정자각의 신문(神門)과 월랑(月廊)의 완령(亂簾)가 과거된 사건이 있었다.³⁰ 단순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반역으로 처벌되지 않았으며, 방화 의도와 석물 훼손 의도가 중요하게 검토되었다.

선릉(宣陵)의 경우, 1625년 3월에 정자각 정문 화재,³¹ 1626년 2월 4일에 왕릉 화재,³² 1626년 2월 15일에 왕후릉에 연이어 화재가 발생했다.³³ 앞서 1625년 3월과 1626년 2월 4일에 화재의 경우, 입직 참봉과 수호군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반면에 1626년 2월 15일 왕후릉의 화재는 용의자가 등장한다.

참봉과 수호군의 진술에 따르면, 인록(仁錄)은 능소 근처에 거주하면서, 능안의 나무를 벌목하곤 했다고 했다.³⁴ 또 작년에는 인록이 수호군에 붙잡혀서 형장을 맞았으면서 패악한 말을 하고서는 다음 날에 정자각에 불이 난 일이

28 『仁祖實錄』4년(1626) 2월 15일.

29 『仁祖實錄』17년(1639) 4월 29일.

30 『仁祖實錄』26년(1648) 3월 2일.

31 『仁祖實錄』3년(1625) 11월 15일.

32 『仁祖實錄』4년(1626) 2월 4일.

33 『仁祖實錄』4년(1626) 2월 15일.

34 같은 기사. 『인조실록』에는 용의자가 仁福이라 기록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에는 仁錄으로 기록되어 있다.

있었기 때문에 인록의 소행인 것 같다고 보고했다.³⁵ 인록을 추국했으나, 추국 과정에서 물고된 것으로 보인다.³⁶ 방화범이 인록인지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고의성의 여부를 두고서 조사를 한 흔적이 확인된다.

1648년 순릉 석물 훼손 사건은 익명서가 발견되면서 추국이 실시되었다.³⁷ 익명서는 원칙적으로 발견하더라도 고변하지 않고 불태우는 것이 원칙이었다.³⁸ 하지만 익명서를 조사하기 위한 삼성추국이 실시되었고, 용의자로 승립(承立)과 승춘(承春)이 체포되었다.³⁹ 추국 과정에서 승춘과 승립 형제가 능관이었던 유득중과 갈등이 발생했고, 그 원한으로 능침에 변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했다.⁴⁰ 이들의 처결에 대한 기록이 완전하지는 않으나, 사면령이 내려질 때 관련자들이 풀려난 것으로 보인다.⁴¹

인조 대 발생했던 산릉의 화재나, 석물을 훼손한 사건을 살펴봤을 때, 반역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산릉을 훼손하는 목적이 국왕이나 왕실을 겨냥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인조 대의 경우, 산릉에 관계되는 사건을 추국하는 과정에서 반역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강상범죄에 대한 규정은 『속대전』에서 명문화되었으나, 그 이전에도 통용되어 처벌된 것으로 보인다.⁴² 『속대전』에서 강상죄인은 신체형과 함께 혈연

35 『承政院日記』仁祖 4년(1626) 3월 4일.

36 『仁祖實錄』4년(1626) 2월 15일.

37 『仁祖實錄』26년(1648) 3월 2일.

38 『經國大典』『刑典』추단.

39 『承政院日記』仁祖 26년(1648) 4월 11일.

40 『承政院日記』仁祖 26년(1648) 4월 25일.

41 『承政院日記』仁祖 27년(1649) 1월 21일.

42 강상범죄와 관련해서 『경국대전』에는 조항은 없으나, 『대명률』과 『대명률직해』에서 강상 범죄와 관계되는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전기부터 『대명률』을 인용하여 강상범죄를 처벌한 기록이 나타난다[『世宗實錄』10년(1428) 4월 21일]. 조선의 법전에서 강상범죄가 규정되는 것은 『속대전』에서 명문화되었으나, 이전에도 『대명률』과 『대명률직해』를 근거로 처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 연좌가 실시되어 아내와 자녀를 종으로 삼고, 집은 파가하여 웅덩이를 만들고, 고을의 호청을 낮추고 수령 파직 등 사회적 연좌를 함께 적용했다. 또한 강상범죄의 경우는 의정부·의금부·사헌부의 관원이 합좌하는 삼성추국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⁴³

인조 대 강상범죄는 33건으로 확인된다.⁴⁴ 강상범죄는 강상윤리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여기에 노주(奴主)의 관계나, 상하천(上下賤)·장관(長官)과 하급 관료·고주(雇主)와 고공(雇工) 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도 강상범죄에 포함된다.

인조 대 강상범죄의 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범죄,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 노비가 주인을 상해한 범죄로 구분된다. 우선, 자식의 불효에 해당하는 강상범죄는 14건이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거나, 구타하거나, 불효를 저지르거나, 후모를 간음하는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는 9건으로 시부모나 시댁에 대한 며느리의 범죄, 남편을 살해한 아내, 형제를 죽인 것, 친족 간의 간음하는 행위이다. 주인에 대한 노비의 강상범죄는 10건으로 주인을 살해하거나, 저주하는 것과 주인의 첩과 사통하는 사례가 등장한다.

마지막은 관료의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추국이 개시된 경우도 있었다. 의금부 전신 기관은 일정한 범위의 관료 범죄 재판권을 행사했다. 6품 이상의 관료

43 『續大典』「刑典」 추단.

44 인조 대 발생한 강상범죄는 연대기 사료인 『인조실록』, 『승정원일기』, 『추안급국안』을 토대로 선별했다. 지방에서 강상범죄가 발생한 경우, 중앙에 보고되었으나 연대기 사료로 전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선별한 33건의 사건이 인조 대 발생했던 강상범죄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추안급국안』에는 1629년 끽치 강상범죄 사건만 수록되어 있다. 해당 사건은 강상범죄인 동시에 반역을 고발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추안급국안』에 수록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외의 강상범죄는 인조 대 『추안급국안』에서 발견되지는 않는다.

표2-인조 대 강상 범죄 사건

순번	사건명	고변 날짜	사건 내용	추국 종류
1	심대복 강상범죄 사건	1623년 5월 12일	어머니에 대한 불효	삼성추국
2	박함원 강상범죄 사건	1623년 6월 16일	적모를 팔아 버림	삼성추국
3	애남 강상범죄 사건	1625년 7월 25일	어머니를 죽임	삼성추국
4	김수 강상범죄 사건	1626년 3월 23일	주인을 죽임	
5	무명 강상범죄 사건	1626년 7월 19일	어머니를 구타하고, 아우를 죽임	삼성추국
6	양세길 강상범죄 사건	1626년 7월 20일	노비 막덕과 공모하여 아버지를 죽임	삼성추국
7	덕신 강상범죄 사건	1628년 5월 3일	아버지(부친)를 죽임	삼성추국
8	권동[권질동이] 강상범죄 사건	1628년 6월 22일	어머니를 때려 죽임	삼성추국
9	끗치 강상범죄 사건	1629년 2월 6일	처첩인 끗치가 남편 김경현을 반역으로 謐告했기에 존장법으로 처벌	정국
10	돌산 강상범죄 사건	1629년 윤4월 29일	주인을 죽임	
11	구을어 강상범죄 사건	1629년 7월 22일	시어머니 살해	삼성추국
12	이계남 강상범죄 사건	1629년 7월 26일	염병에 걸린 어머니를 죽임	
13	김득청 강상범죄 사건	1630년 10월 9일	형제를 저주하여 죽게 함	삼성추국
14	낙금·몽이 강상범죄 사건	1630년 12월 16일	주인을 죽임	삼성추국
15	심기발 강상범죄 사건	1631년 2월 5일	숙모를 간음	삼성추국
16	신숙녀 강상범죄 사건	1631년 4월 3일	시댁 식구를 저주	삼성추국
17	득립 강상범죄 사건	1631년 4월 8일	주인을 죽임	
18	돌무금 강상범죄 사건	1631년 3월 4일	주인을 죽임	삼성추국
19	금이 강상범죄 사건	1631년 12월 22일	상전의 처를 간음	삼성추국
20	애생 강상범죄 사건	1632년 11월 11일	시어머니를 저주	삼성추국
21	칠향 강상범죄 사건	1632년 12월 1일	주인 김경징을 저주	삼성추국
22	김중덕 강상범죄 사건	1637년 12월 30일	아버지(부친)를 살해	삼성교좌
23	박귀금 강상범죄 사건	1638년 1월 28일	아버지(부친)를 타죽게 만듬	삼성추국

순번	사건명	고변 날짜	사건 내용	추국 종류
24	망룡·응립 강상범죄 사건	1639년 5월 20일	주인을 살해	삼성추국
25	가지복 강상범죄 사건	1642년 1월 25일	남편을 모살하려고 시도	삼성추국
26	유지만 강상범죄 사건	1643년 6월 21일	서자인 유지만이 아버지 유림의 장사를 소홀히 처리. 적모와 후실 적모를 저주	삼성추국
27	윤즙 강상범죄 사건	1643년 6월 21일	신경인의 군관인 윤즙은 신경인의 염습 후 그의 첩과 사통	
28	망난 강상범죄 사건	1643년 7월 15일	아버지를 죽일 것을 계획	삼성추국
29	김조 강상범죄 사건	1646년 4월 17일	후모를 간음	삼성추국
30	강세민 강상범죄 사건	1646년 4월 17일	조부의 첩과 간음	수금 중
31	장운 강상범죄 사건	1646년 4월 17일	아버지를 다치게 함	자복 후 정형 미실시 상태
32	명상 강상범죄 사건	1647년 8월 3일	주인을 죽임	삼성추국
33	김응철 강상범죄 사건	1648년 4월 17일	형을 살해함	삼성추국

에서 세종 대부분이 점차 유음자손, 참하 문관 및 무관, 성중관, 문과 및 생진과 합격자, 상인(常人) 출신의 관원, 잡과 합격자로 확대되었다. 숙종 대 이전까지 의금부는 관료 범죄의 담당기관으로 확립되었다.⁴⁵ 인조 대에도 다양한 관료의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국이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⁴⁶

인조 대 추국청이 설치되어 추국이 진행되었던 사건을 검토했다. 인조 대에는 다양한 유형의 반역 사건이 있었으며, 유형별·시기별 특징이 나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인조 재위 기간 동안 다양한 강상범죄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어느 왕대이든 충효범죄를 추국청을 통해 추국하는 것은 일반적인 양상

45 김영석, 앞의 글(2013), 194쪽.

46 의금부의 일반 사법기능이 관료의 범죄 혐의 조사였기 때문에 관료를 대상으로 개시된 추국의 사례는 매우 많다. 이 글에서는 특별재판기구인 추국청이 설치되어 진행된 추국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관료범죄에 대한 사례는 별도로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다. 다만, 인조 대는 반정으로 즉위했기 때문에 앞서 광해군 대 추국청의 운영 기조와는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Ⅲ장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위관 중심의 추국 운영

조선에서 충효범죄가 발생할 경우, 추국청을 설치하여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다. 추국은 참여하는 관원이나 형식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진다. 추국의 종류는 국왕주재추국(國王主宰推鞫)·삼성교좌추국·의금부단독추국으로 구분된다. 국왕주재추국은 장소와 참여관원 및 좌차를 기준으로 친림추국[親鞫]-궐정추국[庭鞫]-의금부 추국으로 세분화된다. 사건별로 추국의 방식은 일관되지 않고 교차되어 진행되기도 했다.

반역 사건의 경우는 국왕주재추국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⁴⁷ 다만, 인조반정 직후의 이이첨 세력과 궁중 저주 사건에 대한 추국, 이정해, 권이평 반역 사건에서는 삼성교좌추국이 진행되었다. 반역 사건을 삼성교좌추국으로 조사하는 것은 인조 대까지 나타나는 양상으로 파악된다.⁴⁸

인조 대의 추국은 위관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었다. 국왕이 최종 의결권자이나, 추국의 실무는 위관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구조였다. 위관은 주로 대신 중에서 결정되었으며, 사건과 관련이 없고, 법적인 지식이 뛰어난 자가 선발되었다. 광해군 대 이전에는 대부분 국왕이 위관을 선정하고, 위관이 추국을 주로 진행했다.⁴⁹

47 김영석, 앞의 글(2013), 222쪽.

48 위의 글, 274쪽.

49 정진혁, 앞의 글(2024b), 174쪽.

표3-광해군 대 추국 운영 양상

(단위: 건)

연도	정국	친국	삼성추국	의금부 추국	비고
1608	-	-	2	33	-
1609	-	-	-	-	-
1610	-	-	-	-	-
1611	-	-	-	-	-
1612	29	54	-	1	-
1613	34	29	-	-	-
1614	15	38	-	-	5월 30일은 정국과 친국 병행
1615	1	9	-	1	-
1616	8	32	-	-	6월 1일은 정국과 친국 병행
1617	19	-	-	-	-
1618	56	-	-	-	-
1620	-	-	-	3	-
1622	16	5	-	-	-
총	178	167	2	38	합계: 382 회 [친국 비율: 43.717%]

위관 위임 추국은 위관과 추국 참여 관원이 추국 진행을 담당하고, 그 내용을 국왕에게 보고하여 승인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인조는 보고받은 내용을 그대로 허용하거나, 추국의 진행 방향 등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정해서 하달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광해군 대의 추국 운영이다.

〈표3〉은 광해군 대 추국이 운영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⁵⁰ 광해군대 추국 양

50 『광해군일기』와 『추안급국안』에 수록된 사건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광해군일기』에서 추국일 실시된 것은 확인되지만, 추국의 종류나 정확한 시행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했다. 추국청이 설치되었고, 국왕이 추국의 개시를 명했으나 추국에 참여해야 하는 관원이 출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국이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왕의 명령이나 추국청의 설치 기사만 있는 경우는 제외했다. 또한 광해군 대는 추안문서의 분실 등으로 추국청이 설치되었으나, 그 양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光海君日記』

표4-선조~영조 대 추국 운영 상세 방식 내역

(단위: 건)

구분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친국 횟수	-	-	-	8	-	11	-	270
정국 횟수	1	-	142	10	-	106	-	67
삼성추국 횟수	1	2	7	-	-	-	-	-
의금부 추국 횟수	2	30	159	32	3	302	31	363
총 추국 횟수	4	32	309	50	3	421	31	700
친국 비율(%)	0	0	0	16	0	2.6	0	38.6

상에서 주목되는 점은 전후의 왕대와 비교했을 때, 높은 비율로 친국이 진행되었다.⁵¹ 위관 위임 추국 운영은 국가의 대신과 법관의 역량이 집약적으로 투입되어 합의된 결과를 도출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왕이 간접적으로 통제하여 왕옥이라는 상징적인 측면까지 충족되는 운영 방법이다.⁵²

조선의 관료는 국왕이 직접 추국을 통제하는 친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친국은 추국의 관례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추국을 운영하여 추국에서 국왕의 전제권이 무단으로 발현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⁵³ 하지만 친국은 명령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을 하는 형정적인 기능도 있었다. 이러한 장점으로, 1728년(영조 4) 이인좌 반역 사건의 경우는 국왕과 관료 간의 친국에 대한 공통적인 합의를 통해 시행되었다.⁵⁴

(중초본) 10년(1618) 3월 25일]. 삼성추국의 경우에는 반역 사건에 대한 삼성추국한 경우만 선별했으며, 강상범죄나 관료범죄는 제외했다. <표3>에서는 광해군 재위 기간의 추국 양상을 온전하게 복원한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양상만 확인할 수 있다.

51 정진혁, 앞의 글(2024a), 183쪽, <표9> 선조~영조 대 추국 운영 상세 방식 내역 참조. 정진혁의 집계는 『추안급국안』에 수록된 사건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표는 해당 국왕 재위기의 모든 추국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경향을 보여 준다. 이를 본문의 <표4>에 인용했다.

52 정진혁, 앞의 글(2024a), 174쪽.

53 한상권, 앞의 글(2023), 269쪽.

54 정진혁, 앞의 글(2024a), 174~178쪽.

광해군 대에는 무력 충돌과 추국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사례가 없었다. 대부분의 반역 사건이 반역 모의 단계에서 발각되었기 때문에 영조 대와 상황이 달랐다. 인조 대 이괄 반역 사건의 경우도 무력 충돌과 추국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친국은 한 차례도 개시되지 않았다. 선조 대에 친국은 7회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⁵ 1589년에 정여립 반역 사건 관련 1회,⁵⁶ 1594년 송유진 반역 사건 관련 3회,⁵⁷ 1596년 김덕령 반역 사건 관련 3회이다.⁵⁸ 정여립 반역 사건을 제외한 송유진·김덕령 반역 사건은 전쟁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했다.

광해군 대에는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없었음에도 친국을 고수했다. 그 과정에서 추국 관원의 부재, 추국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과 같은 비상 형정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다.⁵⁹ 인조 대는 추국청 운영의 기조를 국왕이 주도하기보다는 위관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선대로의 복고를 선택한 것이다.

추국은 일반적으로 심문-진술-형신-재심문-지만(遲晚: 자백)-결안-조

55 심사단계에서, 선조 대는 임진왜란으로 국가의 관문서가 소실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광해군 대와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선조 대 이전 왕대별 친국비율을 정확하게 복원하기는 어려웠지만, 『조선왕조실록』을 검토해 본 결과 종종 친국을 진행했을 뿐 빈번하게 시행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광해군 대는 친국의 횟수가 압도적으로 높고, 친국 관련 기사의 내용도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광해군 대의 친국 비율이 전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다는 것을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6 『宣祖實錄』22년(1589) 10월 19일.

57 『宣祖實錄』27년(1594) 1월 24일; 『宣祖實錄』27년(1594) 2월 6일; 『宣祖實錄』27년(1594) 2월 14일.

58 『宣祖實錄』29년(1596) 7월 17일; 『宣祖實錄』29년(1596) 8월 4일; 『宣祖實錄』29년(1596) 8월 8일.

59 권은나, 「광해군대 반역 사건을 통해 본 정국운영」, 『대구사학』148(2022) 참조.

율-처치의 순서로 진행된다.⁶⁰ 다만, 인조 대는 추국 절차가 정비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추국의 일반 절차가 곧장 생략되었고, 정국이 안정되면서 추국 절차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이해했다.⁶¹

추국의 개시는 국왕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추국이 개시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고변이다. 인조 대 고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는 개인의 고변이다. 개인의 고변은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한다. 고변자가 한 사람인 경우도 있으나, 여러 사람이 함께 고변하기도 한다. 상소문, 투서와 같은 문서 형태로 고변하거나, 구두로 고변했다. 개인이 국왕에게 상소를 올리기도 하지만,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인 사헌부와 포도청, 의금부, 지방관에게 고변하기도 한다. 고변을 들은 기관은 장계로 국왕에게 보고했다.⁶²

두 번째는 기찰(譏察)을 통해 반역 시도를 탐지하여 고변한 경우이다. 1624년 박홍구 반역 사건의 경우, 고변자인 이대온과 이대검은 반역을 모의한 일을 남이홍에게 보고했고, 이이의 경우는 장만과 이귀에게 기찰하라는 명을 받고서 반역 정황을 탐지했다고 했다.⁶³ 김인은 이대온을 통해 박홍구 등의 반역 시도를 알게 되자, 장만에게 보고했다. 장만은 이귀와 최명길과 함께 논의 후, 남이홍을 통해 추가적으로 기찰하도록 했다.⁶⁴

셋째는 내수사의 옥에서 의금부로 이관되어 추국이 결정되는 경우이다.

60 김우철은 추국의 마지막 절차를 처형으로 설정했으나[김우철, 앞의 글(2010)], 오향녕은 처형보다 처치가 적절한 것으로 파악했다[오향녕, 앞의 글(2014b)]. 조율의 결과로 처형 외에 다양한 법적인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처치를 사용했다[권은나, 앞의 글(2022)].

61 김우철, 앞의 글(2010), 220쪽.

62 이하경, 「조선후기 추국장에서의 왕: 영조시기 『추안급국안』 사례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63(2021), 100~101쪽.

63 오향녕(역주), 『국역 추안급국안 7』(서울: 흐름출판사, 2014), 299~301쪽.

64 위의 책, 313~330쪽.

내수사에서 인조를 저주한 것을 밝히면서, 관료들이 추국청으로 이관을 요청했다. 1646년 폐세자빈 강씨 반역 사건에서 1646년 4월 17일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내수사의 죄인을 추국을 통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고, 당일에 내병조에서 추국이 개시되었다.⁶⁵ 1647년 예옥 반역 사건도 4월 16일에 사간원과 사헌부가 내수사의 죄인을 의금부로 이관할 것을 요청하여 당일에 내병조에서 추국이 개시되었다.⁶⁶

넷째는 국왕의 단독 결정으로 추국이 개시되는 경우이다. 해당 경우는 인조의 즉위 초 두 사건에 한하여 나타나는 사례이다. 인조는 인목대비의 폐모의 계기가 된 광해군 대의 저주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한 추국과 광해군 대 주요 정치세력의 숙청을 위해 비망기를 통해 추국 시행을 명했다.⁶⁷

인조 대 추국 개시 과정을 보면, 국왕의 최종 명령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를 국왕의 자의적이거나 독단적인 판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최종적인 기소권은 국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추국 개시에 국왕의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⁶⁸ 다만, 내수사에서 의금부로 이관 요청을 승인한 것과 인조의 독단으로 추국이 개시되었으나 체포 명단은 관료의 의견을 수용한 측면을 보면, 국왕과 관료의 합의가 바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추국 개시 명령이 있는 후, 추국 종류와 추국청 설치 장소, 위관과 당상관 추국, 문사낭청이 선정되면서 추국이 개좌된다. 인조 대의 추국청은 궁궐 내의 뜰, 내병조, 도총부와 궁궐 외부에 위치한 의금부에 설치되었다. 인조 대 궁궐에 추국청이 설치된 경우는 총 20건이다. 이 가운데 궁궐의 뜰에 추국청이

65 김우철(역주), 『국역 추안급국안 17』(서울: 흐름출판사, 2014), 255~256쪽.

66 김우철(역주), 『국역 추안급국안 18』(서울: 흐름출판사, 2014), 21~22쪽.

67 오흥녕(역주), 『국역 추안급국안 4』(서울: 흐름출판사, 2014) 4, 23~24쪽.

68 이하경, 앞의 글(2021), 104쪽.

표5-인조 대 추국 장소와 종류

사건명	추국 장소			추국 종류	비고
	궁궐 내부		궁궐 외부		
	궁궐 뜰	내병조	의금부		
1623년 아이첨 반역 저주 ·사건 재조사	○			삼성추국 정국	
1623년 유전 반역 사건	○			정국	
1623년 이유림 반역 사건	○			정국	
1624년 이괄 반역사건	○		○	정국 삼성추국 금부추국	
1624년 김정립 무고 사건			○	금부추국	
1624년 박구 반역 사건	○		○	금부추국 정국	
1624년 박홍구 반역 사건	○			정국	
1625년 윤안형 무고 사건	○			정국	
1625년 박응성 반역 사건		○	○	정국 금부추국	
1625년 정윤복 무고 사건			○	금부추국	
1626년 조경운 무고 사건				정국	
1628년 유효립 반역 사건		○		정국	
1628년 임석후 반역 사건	○			정국	
1628년 송광유 무고 사건		○		정국	
1629년 끗치 무고 사건		○		정국	강상범죄
1629년 이충경 반역 사건			○	금부추국	
1630년 한선내 반역 사건			○	금부추국	
1630년 김대기 무고 사건			○	금부추국	
1631년 원충립 무고 사건			○	금부추국	
1631년 정한 반역 사건		○	○	정국 금부추국	

사건명	추국 장소			추국 종류	비고
	궁궐 내부		궁궐 외부		
	궁궐 뜰	내병조	의금부		
1632년 유응형 반역 사건		○	○	정국 금부추국	
1633년 임석간 무고 사건	○			정국	
1633년 이탁 반역 사건			○	금부추국	
1635년 이기안 반역 사건			○	금부추국	
1635년 박천건 무고 사건			○	금부추국	
1639년 기옥 반역 사건			○	금부추국	
1643년 이정해 반역 사건			○	금부추국 삼성교좌	
1644년 심기원 반역 사건				금부추국	
1644년 의정 반역 사건		○		정국	
1646년 안익신 반역 사건		○		정국	
1646년 조시응 무고 사건	○			친국 정국	
1647년 예옥 반역 사건		○		정국	

설치된 경우가 12건이고, 나머지는 10건은 내병조에 설치되었다.⁶⁹ 궁궐 밖에 추국청이 설치된 경우는 의금부에 설치되었으며, 총 16건이다.

추국청은 동일 사건이라도 한곳에만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 죄인의 체포 시점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장소에 추국청이 설치되었다. 1624년 이괄 반역 사건의 경우, 궁궐 뜰과 의금부, 1625년 박옹성 반역 사건의 경

69) 정한 반역 사건의 경우 『국역 추안급국안』에 병조에 추국청을 설치했다고 번역되어 있는 데[오항녕(역주), 『국역 추안급국안 9』(서울: 흐름출판사, 2014), 171쪽] 원문을 확인해보면 '庭鞫兵曹'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 병조는 궁궐 밖에 위치한 병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궁궐 내부에 위치한 내병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인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확인했을 때, 추국청을 내병조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다[『仁祖實錄』 6년 (1628) 1월 3일; 『承政院日記』 仁祖 6년(1628) 1월 3일].

우 내병조와 의금부, 1631년 정한 반역 사건의 경우 내병조, 의금부, 병조, 1632년 유옹형 반역 사건의 경우 내병조와 의금부에 추국청이 설치되었다.

추국청은 특별재판소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설치 위치가 사건에 따라 달라졌다. 기존 연구에서 추국청이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라고 이해했다.⁷⁰ 인조 대에 추국청을 설치하는 공간으로 사건의 중요도나 난이도, 혹은 시기별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발견하기 어렵다.

인조대 발생한 반역 사건 가운데 인조가 파천까지 단행해야 했던 1624년 이괄 반역 사건은 가장 많은 인원이 연루되었던 사건이다. 이괄 반역 사건의 경우, 1624년 1월 17일에 김광소를 시작으로 고변이 있은 후,⁷¹ 1월 19일에 본격적으로 추국이 실시되었다. 추국은 궐정에서 실시되었다.⁷² 1월 22일 이괄이 거병했고, 1월 24일에 조정에 소식이 전해졌다.⁷³ 1월 24일까지는 궐정에서 추국이 시행되었고, 2월 4일까지 추국청이 열리진 않고, 죄인의 처형과 의금부의 보고만 기록되어 있다. 2월 4일부터 다시 궐정에서 추국이 시행되었다.⁷⁴ 이후 이괄의 군대가 진군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추국을 일시 정지했다.⁷⁵

인조가 서울로 귀환한 후에는 의금부의 조사 보고와 반역 죄인의 처형만 확인된다. 기록상으로 3월 1일부터 의금부에 추국청이 설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⁷⁶ 3월 24일을 기준으로는 의금부에서 삼성추국으로 실시되었

70 김영석, 앞의 글(2019), 222쪽.

71 『仁祖實錄』2년(1624) 1월 17일

72 오항녕(역주), 『국역 추안급국안 5』(서울: 흐름출판사, 2014), 256쪽.

73 『仁祖實錄』2년(1624) 1월 24일; 『국역 추안급국안 6』(서울: 흐름출판사, 2014), 62~63쪽.

74 오항녕(역주), 『국역 추안급국안 6』(서울: 흐름출판사, 2014), 76~87쪽.

75 위의 책, 129쪽.

76 위의 책, 217쪽.

다.”⁷⁷ 궤정추국에서 삼성추국으로 전환된 것은 이괄 반역 사건에 주범이 대부분 처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금부에 추국청이 설치되었을 때 여전히 다수 인물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연좌 시행이 논의되고 있었다.

추국청 설치 장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사건의 중요성이 낮아져서 의금부로 옮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의금부 낭청이 추국청은 대궐 안이나, 의금부나, 의금부 도사가 소송을 밟아 번을 서는 사무실인 당직(當直)에 설치 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상황에서 추국청을 의금부에 설치한다면 죄인을 데려오는 과정에서의 폐단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조도 의금부에 추국청을 설치하는 것을 허락했다.⁷⁸

3월 24일부터 인조의 명령으로 추국청이 의금부에 설치되면서 삼성추국으로 전환되었다.⁷⁹ 이 시점은 주요 처벌을 마무리한 후였다. 3월 23일까지 삼정승과 의금부 당상과 언관 2인, 문사낭청 4인, 형방도사 2인, 문서 도사 1인이 위관으로 참여했는데,⁸⁰ 삼성추국을 실시할 때는 좌의정과 의금부 당상, 언관 1인, 문서낭청 4인, 형방도사 1인만 참여했다.⁸¹ 추국의 종류가 바뀔 때는 사건의 인식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확인되지만, 추국청의 장소만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렵다.

인조 대 추국에서 위관은 모두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부분 좌의정이나 우의정이 위관으로 임명되었다.⁸² 일반적으로 추국청에 참여하는 관원은 전·현직 정승, 의금부의 당상관, 대사현과 대사간, 문서낭청, 승지, 의금부 당하관

77 오항녕(역주), 『국역 추안급국안 7』(서울: 흐름출판사, 2014), 39쪽.

78 오항녕(역주), 『국역 추안급국안 6』(서울: 흐름출판사, 2014), 211쪽.

79 오항녕(역주), 『국역 추안급국안 7』(서울: 흐름출판사, 2014), 38~39쪽.

80 위의 책, 32~33쪽.

81 위의 책, 39~40쪽.

82 『인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委官’으로 검색한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이다. 시기에 따라 문사낭청의 인원 변동은 있었다.⁸³ 반역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따라 죄인을 체포하기 위해 가도사가 차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조 대는 전·현직 정승, 의금부 당상관 4인, 대간 2인, 승지 1인, 문사낭청은 4인, 의금부 당하관 4인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친립추국은 전·현직 정승, 의금부 당상관 4인, 대간 2인, 문사낭청 4인, 의금부 당하관 2인, 승지 6인, 사변가주서 4인이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⁸⁴

인조 대의 추국에 참여하는 관원의 규모와 추국청 설치 장소의 관계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⁸⁵ 1623년 광해군 대 저주 사건 재조사는 삼성추국으로 시행되었는데, 3월 23일 참여 관원은 우의정, 판의금부사, 동지의금부사 2인, 지의금부사, 대사간, 좌부승지, 지평과 문사낭청 4인, 도사 2인이었다.⁸⁶ 4월 5일에는 월정추국으로 개시되었는데, 참여 관원은 좌의정, 판의금부사, 지의금부사 2인, 동지의금부사 1인, 승지 1인, 대사간, 지평과 문사낭청 4인, 도사 3인이었다.⁸⁷

1643년 이정해 반역 사건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이정해 반역 사건은

83 『육전조례』에 따르면, 문사낭청의 인원은 친국일 때 8명, 정국일 때, 6명, 의금부추국일 때, 4명, 삼성추국일 때 2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심문 횟수가 많아지거나, 사건이 복잡할 경우에 문사낭청의 수를 조정했다[이하경, 앞의 글(2022), 181쪽]. 『육전조례』는 1867년(고종 2)에 편찬된 책이기 때문에 인조 대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84 『鞠廳日記』(1), 13~15쪽, 順治三年丙戌五月二十八日 親鞫迎時開坐推官 昇平府院君 金璽 領議政金自點 右議政 南以雄 判義禁府事 閔馨男 知義禁府事 鄭太和 同知義禁府事 柳恒 大司憲 金南重 同知義禁府事 金光煜 大司諫 蔡裕後 問事郎廳 議政府舍人 李時模 侍講院輔德 閔應協 弘文館 校理 金振 弘文館副修撰 林嶧 別刑房都事 都事 李時億 文書色 都事 吳以奎 入侍 行都承旨 俞澈 行左承旨 南鉄 右承旨 尹絳 左副承旨 李棟 右副承旨 李時楷 同副承旨 洪豫 主書 李惟碩 假主書 丁彥璧 推鞫假主書 鄭檪 記事官 瞳兼善 金始振.

85 인조 대의 추국 참여 관원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관원의 출사 여부에 달려 있다. 해당 관직자가 병이나 기타 이유로 출사하지 않은 경우에 추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86 오탕녕(역주), 『국역 추안급국안 4』(서울: 흐름출판사, 2014), 56쪽.

87 위의 책, 104~105쪽.

삼성교좌로 추국이 진행되었다.⁸⁸ 추국청은 의금부에서 개최되었고, 추국 참여 관원은 좌의정, 판의금부사, 지의금부사, 동지의금부사 2인, 행 대사헌, 우부승지, 집의와 별문사 낭청 4인과 도사 4인이었다. 추국 참여 대상이었던 승평부원군 김류, 익녕부원군 홍서봉, 영중추부사 강석기, 우의정 심기원은 병을 이유로 출사하지 않았던 상태였다.⁸⁹ 1624년 이괄 반역 사건 때 국왕주재 추국인 궐정추국에서 삼성추국으로 전환될 때와 달리 삼성추국이나 궐정추국으로 추국청을 개시할 때는 참여 관원의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친국의 경우는 승정원 소속의 관원이 크게 증가한다. 인조 대 친국의 시행은 1646년 5월 28일 조시옹 무고 사건의 경우가 유일하다. 조시옹 무고 사건은 9차례 추국이 실시되었으며, 그중에 한 차례만 친국으로 진행되었다.⁹⁰ 그 밖의 추국에서는 궐정추국과 의금부 추국, 삼성추국이 교차되어 실시되었다.

『경국대전』의 반포 전후로 추국 관원의 입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으나, 『은대편고』, 『은대조례』와 『육전조례』, 『금오헌록』에서 자세하게 규정이 마련되었다. 추국에 따라서 참여 관원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친국과 궐정추국, 의금부추국의 구성은 동일하고, 문사낭청의 수와 승지의 수에서는 차이가 있다. 성종 대까지는 추국에 따른 입시 관원에 대한 확립된 규정은 없었으나, 현직 정승과 의금부 당상관은 필수적으로 입시했던 것으로 보인다.⁹¹

중종 대의 경우는 추국마다 약간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친국할 때 현직 정승, 의금부 당상, 도승지, 형방승지, 문사낭청, 사관 등이 입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사낭청은 2인, 사관은 주서를 포함하여 2~3인이 입시했다. 중종 대부분 대간이 친국에 입시하는 것이 확인된다. 1513년(중종 8) 10월 22일에

88 김우철(역주), 『국역 추안급국안 15』(서울: 흐름출판사, 2014), 28쪽.

89 위의 책, 32~33쪽.

90 『鞠廳日記』(1), 13~15쪽.

91 김영석, 앞의 글(2013), 226~227쪽.

중종은 좌의정 송일의 견해에 따라 대간의 친국 입시를 명했다.⁹² 다만, 대사헌과 대사간만 입시하면 되고, 사정이 있을 경우 다른 대간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중종 대부터 대간의 입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⁹³

대간의 입시는 대사헌과 대사간으로 정해졌으나, 선조 대부터는 장령과 현납 등 사간원과 사헌부의 관원 1인이 참여하고 있었다.⁹⁴ 광해군 대부터 전직 정승과 승지 전원이 친국 때 입시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문사낭청의 경우도 2명에서 4명으로 증가했다.⁹⁵ 인조 대 친국 참여 관원은 한층 더 정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현직 정승, 의금부 당상 및 승지 전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1인씩 입시, 문사낭청과 의금부 당하관이 입시했다. 이는 영조 대 추국 관원의 인원 구성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국 개좌 후 첫 절차는 심문이다. 심문은 고문이 동반되는 형문과 그렇지 않은 평문으로 나뉜다. 심문은 단독 심문으로 진행되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 대질심문과 형문이 동원되었다.⁹⁶ 형문의 경우, 죄인의 자백을 받기 위해서 동원되었다. 인조 대 형문은 기본적으로 신장(訊杖)이 실시되었다.⁹⁷ 인조 대 신장은 1차에 30대씩 타격했고, 하루에 2차 이상 타격하지 않았다. 신장으로 타격했음에도 자백하지 않을 경우, 압슬형(壓膝刑)과 낙형(烙刑)이 실시되었다. 신장의 경우는 법적인 고신 방법이고, 압슬과 낙형의 경우는 비법적인 고문 방법이다.

92 『中宗實錄』 8년(1513) 10월 22일.

93 김영석, 앞의 글(2013), 229~231쪽.

94 위의 글, 259~260쪽.

95 위의 글, 232~234쪽.

96 이하경, 앞의 글(2021), 108~109쪽.

97 신장에 대한 규정은 1417년(태종 17) 1차에 30대씩 때리도록 했다[『太宗實錄』 17년(1417) 5월 13일]. 이후 1696년(숙종 22) 추국청을 제외하고 1일 1차 고신하도록 했고, 1754년(영조 21)에 추국청에서도 1일 2차 이상 타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秋官志』 권2; 정진혁, 앞의 글(2022), 185쪽].

15세기부터 점차 압슬과 낙형이 활용되다가, 16세기에 일련의 정비 과정을 거친다. 압슬과 낙형을 실시하는 대상은 반역 혐의자로 한정되었고, 추국 청에서만 국왕의 명을 받고 시행할 수 있었다. 16세기 말부터 평문-신장[고신]을 거친 후에야 압슬과 낙형을 실시하는 혼합된 방법이 관례화된다. 압슬과 낙형의 혹형 대상은 국왕과 추국 관원의 합의제적인 방식을 통해 결정되었다.⁹⁸

인조 대에도 동일하게 평문과 신장이 실시된 후에야 압슬과 낙형이 실시되는 양상이 나타난다.⁹⁹ 형문이 시행되는 대략의 과정은 1차, 2차 형신에서는 신장이 실시되고, 압슬이나 단근질이 3차, 4차로 시행된다. 이후에도 자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압슬과 단근질이 시행되지 않고 다시 신장이 실시되는 양상을 보인다. 신장은 1차마다 30대씩 때리도록 한 규정이 유지되고 있던 것이 확인된다.¹⁰⁰ 인조 대에는 타격과 관련한 법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다만, 하루에 타격하는 횟수나 압슬과 단근질의 경우는 1회씩 시행했고, 신장의 경우도 보통 1회씩 타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며, 2회 이상 타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¹⁰¹

자백이 이루어지면 결안 문서가 작성되고, 조율 절차를 거쳐 부대시(不待時) 처형되었다. 반역의 경우, 조율은 『대명률』 모반대역조를 근거로 처형 방법과 연좌 범위를 결정했고, 강상범죄의 경우도 『대명률』 「형률」의 조항에 근

98 위의 글(2022), 201쪽.

99 인조 대 추국 과정은 〈부록〉의 표 참조. 이 표는 1624년 박홍구 반역 사건의 추국 일지를 정리한 것으로 인조 대 심문 과정을 대략적으로 보여 준다. 인조 대 확인 가능한 추국 일지를 이 논문에서 모두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건을 선별했다.

100 『太宗實錄』 17년(1417) 5월 11일.

101 1696년(숙종 22) 추국청을 제외하고 1일 1차 고신 실시하도록 규정되었고, 1745년(영조 21)에 추국청에서도 1일 2차 이상 타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다. 정진혁, 앞의 글(2022), 185쪽.

거하여 처형 방법과 연좌 범위가 결정되었다. 또 사건에 따라서 읍호강등, 파가지택, 가산의 몰수가 함께 시행되기도 했다.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조 대 추국 운영은 위관 위임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위관 위임 추국 운영은 광해군 대 이전의 보편적인 추국 방법이었다. 하지만 광해군이 친국의 운영을 고수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따라서 인조 대부터는 다시 위관을 임명한 위관 위임 추국이 주로 실시되었다. 위관 위임 추국 운영 방식이 고착화되면서 추국 참여 관원이 정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며, 이는 조선 후기의 양상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IV. 맷음말

이 글은 인조 대 개시된 추국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국청 운영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기존 연구에서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17세기 인조 대의 추국 운영을 전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조선 전기와 후기의 과도기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

인조 대 추국 사건은 반역, 강상범죄, 관료범죄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반역 사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조반정이라는 정치적인 격변과 명청교체기라는 외교적인 긴장이 맞물리면서 다양한 형태의 반역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 살해, 노비의 주인 살해 등 강상 범죄 또한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회 질서와 윤리를 어지럽히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조사하고 처결하는 추국의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했다.

인조 대의 추국 운영은 위관 위임 추국 형태로 운영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광해군 대의 친국 중심의 운영과 명확하게 대비된다. 인조 대는 광해군 대

의 친국 중심의 운영에서 복고하여, 대신과 법관에게 추국의 실무를 위임함으로써 합의제적 절차를 회복했다. 이러한 변화는 형정의 안정화와 제도적 복원을 지향했던 인조 대의 정치적 기조를 반영했다.

인조 대 추국청의 설치 장소나 참여 관원의 구성을 확인하여, 일정한 체계 속에서 추국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궁궐의 뜰, 내병조, 궁궐 외부의 의금 부의 공간에서 추국청이 개최되었으나, 이는 사건의 성격보다는 편의적인 요인과 상황적인 필요로 결정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조 대 추국 참여 관원의 구성 또한 정형화된 양상을 보이며, 조선 후기의 인원 구성과 유사한 형태였다.

인조 대의 추국 운영은 전대의 폐단을 바로잡고 형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추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추국 참여 관원을 확보하여 형정 운영의 정당성과 합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점에서 인조 대는 조선 후기 형정 제도의 기초를 마련하는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唐律疏議』, 『經國大典』, 『續大典』,
『太宗實錄』, 『中宗實錄』, 『宣祖實錄』, 『光海君日記』(중초본), 『仁祖實錄』, 『承政院日記』,
『鞠廳日記』, 『推案及鞠案』, 『秋官志』.

2. 논자

- 권내현, 「강상과 역모, 노비 첨의 남편 고발」, 『조선시대사학보』 113, 2025, 223~251쪽.
권은나, 「광해군대 반역 사건을 통해 본 정국운영」, 『대구사학』 148, 2022, 35~74쪽.
김갑천, 「인조조의 정치적 '適實' 지향성에 관한 연구: 和斥論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김건우, 「1629년 말치 고변사건의 전개와 그 의미」, 『역사와 실학』 44, 2011, 59~89쪽.
김영석, 「의금부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용희, 「인조반정의 명분과 정권의 정통성 논쟁」, 『역사학연구』 27, 2006, 171~172쪽.
김우철, 「조선후기 추국 운영 및 결안의 변화」, 『민족문화』 35, 2010, 207~234쪽.
김우철(역주), 『국역 추안급국안 10~18』, 서울: 흐름출판사, 2014.
김인숙, 「인조대의 궁중저주사건과 그 정치적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31, 2004, 79~111쪽.
김정자, 「1801년(순조 1) '신유옥사'의 시작과 변화 양상: 이가환·이기양 추국 사건과 주문
모 신부 추국 관련 『추안급국안』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67, 2023, 83~135쪽.
김정자, 「1862년(철종 13) '이하전 옥사'의 전말과 그 의미: 『좌포청등록』·『추안급국안』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63, 2025a, 349~394쪽.
김정자, 「1866년(고종 3) '병인사옥'과 1868년(고종 5) '덕산사건'·'무진옥사'의 처분과 그
의미: 『추안급국안』을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86, 2025b, 71~123쪽.
김태민·임대희(편), 『역주 당률소의: 명례편』,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4.
문경득, 「조선후기 신문 진술 기록의 사료 비판 방법론 연구: 무신역옥추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3, 2017, 45~79쪽.
오갑균, 『조선시대 사법제도 연구』, 부산: 삼영사, 1995.
오항녕(역주), 『국역 추안급국안 1~9』, 서울: 흐름출판사, 2014a.
오항녕, 「조선시대 추안에서 만난 주체의 문제」, 『중국어문논역총간』 34, 2014b, 63~88쪽.
오항녕, 「기축옥사의 비극적 사건과 기억들」, 『한국인물사연구』 23, 2015, 245~280쪽.

- 우경섭, 「인조대 친청파의 존재에 대한 재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1, 2017, 126~127쪽.
- 이가희, 「인조 6년(1628) 송광유 고변사건 처리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 『전북사학』 63, 2021, 123~150쪽.
- 이하경, 「추국장에서 만난 조선후기 국가: 영조와 정조시대 『추안급국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a.
- 이하경, 「조선후기 추국장의 정치적 의미: 영조 13년(1737) 김성탁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0, 2018b, 187~215쪽.
- 이하경, 「조선후기 추국의 문사낭청 역할에 관한 일고찰」, 『사학연구』 117, 2022, 167~200쪽.
- 이하경, 「조선후기 추국장에서의 왕: 영조시기 『추안급국안』 사례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63, 2021, 93~124쪽.
- 이하경, 「강상범죄 재판절차, 삼성추국」, 『법사학연구』 71, 2025, 43~75쪽.
- 장희홍, 「조선후기 역모사건과 환관의 내용」, 『역사와 실학』 29, 2006, 115~143쪽.
- 전경복, 「조선시대 역모사건의 조사와 재판」, 『조선후기 법률문화 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 정광호, 「(해제) 추안급국안」, 『민족문화』 1, 1975.
- 정석종, 「추안급국안의 민중사적 가치」, 『한국학문헌연구의 현황과 전망』, 성남: 아세아문화사, 1983.
- 정석종, 『조선후기 사회변동연구』, 서울: 일조각, 1993.
- 정진혁, 「조선후기 말세론 사건에 대한 추국청의 형사 대응」, 『한국사연구』 196, 2022, 31~70쪽.
- 정진혁, 「조선후기 형정 개혁과 추국 운영의 변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a.
- 정진혁, 「18세기 무신란 진압과 비상 형정의 형성」, 『동방학지』 209, 2024b, 235~270쪽.
- 정진혁, 「조선후기 결안의 운영 체계와 개편 양상」, 『한국문화』 110, 2025a, 251~291쪽.
- 정진혁, 「18세기 친국 확대와 추국 운영의 개편」, 『학림』 55, 2025b, 281~325쪽.
- 조윤선, 「영조 6년(경술년) 모반 사건의 내용과 그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42, 2007, 191~236쪽.
- 조윤선, 「영조 9년, 남원 만복사 패서 사건의 정치적·법제적 고찰」, 『전북사학』 33, 2008, 105~142쪽.
- 차인배, 「1853년(철종 4) 김수정 역모사건에 관한 사법적 재고: 『포청등록』과 『추안급국안』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66, 2025, 203~236쪽.
- 한상권, 「『추안급국안』 자료의 신빙성: 1689년(숙종 14) 박태보 친국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02, 2023, 223~273쪽.

부록-1624년 박홍구 반역 사건 추국일지

추국 일자	절차	내용	비고
1624년 11월 8일	고변 심문	고변: 이대온, 이대검 심문: 이대온, 이이, 김인, 이대검, 심일민	-
1624년 11월 9일	심문 형문	심문: 박윤장, 정문부, 박홍구, 김원, 정승, 이계종, 박내장, 박일장, 권충달, 성여춘, 이광, 이전 형문: 박윤장, 이계종, 김원, 박일장	-
1624년 11월 10일	심문 형문 처치	심문: 조정, 박노, 민응희, 조준남, 최관, 박유장, 박지장 형문: 박윤장(2차, 3차), 이계종(2차, 3차), 김원(2차, 3차), 박일장(2차, 3차), 이대온, 이대검 석방: 박노, 민응희, 조준남	-
1624년 11월 11일	심문 형문 결안-조율- 처벌	심문: 이대온, 이대검 형문: 박지장(1차, 2차), 박유장(1차, 2차), 정문부, 이계종(4차), 김원(4차) 박윤장 결안-조율-처벌[연좌, 가산적물]	-
1624년 11월 12일	심문 형문	심문: 박진장, 채금, 박이장, 박성장, 김인 형문: 박성장, 박진장, 정문부(2차), 박지장(3차), 박유장(3차), 김원(4차, 압슬), 이계종(4차, 낙형) 이계종 자백	-
1624년 11월 13일	심문 형문 결안-조율- 처벌 처치	심문: 조유도, 박지태 형문: 박유장(4차, 5차), 정문부(3차, 압슬), 박진장(2차, 3차), 박내장(1차, 2차), 박성장(2차, 3차), 박일장(4차) 석방: 조정, 최관, 조유도 박지장 자백 이계종 결안-조율-처치[연좌, 가산적물] 김원 결안-조율-처치[연좌, 가산적물]	-
1624년 11월 14일	심문 형문 결안-조율- 처벌	심문: 원수신, 이시망 형문: 박일장(4차, 압슬), 박성장(3차, 압슬), 박유장(6차), 박진장(4차), 박내장(3차) 박성장 자백 박지장-결안-조율-처치[연좌, 가산적물]	수령 파직 및 파가 저택: 박윤장, 김원, 이계종, 박지장

추국 일자	절차	내용	비고
1624년 11월 16일	심문 형문	석방: 심일민, 김인, 이이 형문: 박성장(4차, 압슬), 박일장(5차, 압슬), 박유장(6차), 박진장(5차, 6차), 박내장(4차, 5차), 이시방(1차, 2차) 물고: 박일장	-
1624년 11월 17일	심문 형문	심문: 조유용, 최명량 석방: 최유용, 최명량 물고: 박유장, 이시망	-
1624년 11월 18일	심문 형문	심문: 김재신, 정광택, 조여빈 형문: 정문부(4차, 압슬), 박성장(5차), 박진장 (7차) 대질심문: 이대온과 김재신, 이대온과 정광택, 이대온과 조여빈 물고: 박진장	-
1624년 11월 19일	심문 형문 결안-조율- 처벌 처치	심문: 춘경 형문: 박성장(6차), 정문부(5차, 압슬), 이대온 (2차), 이대검(2차), 박홍구(1차, 3차) 박성장 자백-조율-처벌[처형, 연좌, 재산몰수] 이대검 자백-조율-처벌[처형-연좌-가산적물] 이대온 자백-조율-처형[처형-연좌-가산적물] 대질심문: 권충달과 이대온 석방: 이전, 성여춘 물고: 정문부	-
1624년 11월 20일	처치	박홍구 자결 처분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인조 대에 개시된 추국(推鞫)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국 운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연대기 사료와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추국청의 설치 장소, 추국 종류, 참여 관원, 절차를 분석했다. 인조 대 추국이 개시되는 경우는 반역, 강상범죄, 관료범죄의 세 유형이었다. 특히, 충효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조 대 추국은 위관(委官)을 중심으로 한 위임 추국을 지향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친국(親鞫) 중심으로 추국을 운영했던 광해군 대의 형정 운영의 기조를 전대(前代)로 복고(復古)한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인조 대 추국의 절차와 참여 관원의 구성이 점차 표준화되었으며, 이는 조선 후기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인조 대의 추국청 운영은 단순 사법 절차의 변화가 아니라, 국왕과 관료의 합의가 재조정되는 형정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투고일 2025. 10. 10.

심사일 2025. 10. 31.

제재 확정일 2025. 12. 2.

주제어(keywords) 추국(推鞫, Chuguk), 추국청(推鞫廳, Chugukcheong), 위관(委官, Wigwan), 위임 추국(委任 推鞫, Wiim Chuguk), 친국(親鞫, Chinguk),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Chuangüp Guk-an)

Abstract

Chuguk (推鞫) Cases and the Operation of the Chugukcheong (推鞫廳) during King Injo's Reign

Kwon, Eunna

This study provides an empirical analysis of Chuguk (推鞫) cases during King Injo's reign (1623–1649),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practices of the state investigation courts (Chugukcheong, 推鞫廳). Using chronological records and the *Chuangüp Guk-an* (『推案及鞫案』), it examines court locations, types of chuguk, participating officials, and procedures. Cases are categorized into treason, moral crimes, and bureaucratic misconduct, with moral offenses as the most common. Chuguk was mainly conducted via delegated commissions (wigung) rather than direct royal interrogations, reflecting a return to earlier judicial norms. The standardization of procedures and official composition under Injo laid the groundwork for the late Joseon judicial system, signaling a recalibration of authority between monarchy and bureaucracy.